# 택 시 물 류 과

##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

직	성 명			전화번호	
택 시 물	류 과 장	김	명	용	3707-9750
택 시 괸	리팀장	0	광	환	6321-4338
담	당 자	국	응	생	3707-9752

#### 목 적

- 친절을 생활화하고 직업의식을 갖춘 우수 운수종사자 양성
-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

### □ 사업개요

- 우수종사자 교육
  - 근 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
  - 대 상: 86,800명(택시 55,800, 화물 31,000)
  - 교육종류 : 정기교육, 보충교육, 신규교육
  - 교육시간 : 정기교육 4시간, 보충교육 4시간, 신규교육 16시간
  - 교육기관 : 3개 기관(교통문화교육원, 교통연수원, 새마을연수원)
    - ▶교통문화교육원 : 개인택시 정기·보충교육 / 화물 정기교육 각 4시간
    - ▶교통연수원 : 법인택시 정기·보충교육/ 화물정기교육 각 4시간, 법인택시 신규교육 16시간(비합숙교육 2일)
    - ▶ 새마을연수원 : 개인택시 신규교육 16시간 (1박2일 합숙교육)
-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
  - 규 모 : 대지 1,650.1 m², 건물 5,222.67 m² (지상5층, 지하1층)
  - 소 재 지 : 관악구 남현동 1063-6
  - 사업내용 : 복지사업(사우나, 헬스), 교양사업(에어로빅, 요가, 발리댄스), 교육사업
  - 수 탁 자 : (사)전택노련복지협회(근무인원 21명)
  - 위탁기간 : 2010. 9. 1 ~ 2013. 8.31
  - 위탁내용
    - 운수종사자 교육사업
    - · 운수종사자 복지 · 교양사업 및 교육원 시설물 등 유지관리 · 운영

#### □ 사업추진계획

- 택시 신규자 교육 : 의무교육 16시간
- 택시 경력자 교육
  - 근무경력 5년 미만자 : 정기교육(4시간) 매년 실시
  - 근무경력 5년 이상 ~ 10년 미만자 중 무사고자, 법규위반이 없는 자 : 정기교육 격년 실시
  -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중 무사고자. 법규위반이 없는 자 : 정기교육 면제
  - 법규위반자, 사고자 : 보충교육(4시간)
- 화 물: 정기교육 4시간
- 운수종사자 교육보조금 지원 : 608백만원(8,000원×76,000명)
  - 교육비 지원 : 1인당 8,000원
  - 교육인원 : 76,000명(택시 45,000명, 화물 31,000명)
    - ※ 택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생 10,800명(개인 2,000명, 법인 8,800명)은 교육비 지원이 교육생 자부담
  - 교육기관별 교육종류
    - · 교통연수원 : 법인택시 정기 · 신규자 교육 및 보충교육, 화물교육
    - 교통문화교육원 : 개인택시 정기 및 보충교육. 화물교육
    - 새마을교육원 : 개인택시 신규자 교육

### □ 2011 감추경예산(안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계	1,333	1,449	△116	
민간경상보조 (307-02)	492	608	△ 116	<ul> <li>'11년 하반기 교육계획</li> <li>★교육인원 61,500명 × 교육비 8,000원(1인당)</li> <li>= 492,000천원</li> <li>집행잔액</li> <li>★608,000천원-492,000천원=116,000천원</li> </ul>
민간위탁금	841	841	_	

### □ 감추경사유

- '11년도 예산편성 당시 교육대상자를 "경고"처분 받은자까지 산정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,
- 법규위반자 중 경미한 사항으로 "경고"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조합 또는 업체에서 자체교육토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어
-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는 교육비에 대하여 감추경
  - 교육감소인원 : 14,500명 (감추경액 116백만원= 8,000원×14,500명)